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624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8. 19.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8가단2623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6. 25.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0,615,6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615,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6.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2008. 11. 25. 신용카드가입계약을 맺었다. D은 위 계약에 기하여 2018. 12. 12. 기준 원고에게 68,241,037원 상당의 카드이용대금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상속인으로 아내인 피고(상속분 3/13), 자녀인 D 등 5인(각 상속분 2/13)을 두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8. ‘2018. 6.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당시 D 명의의 재산은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권자 주식회사 F 명의로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담보채무액은 79,998,129원(= 49,998,435원 + 29,999,694원)이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2018. 10. 26.과 2018. 11. 1. 변제로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18. 6. 25.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2018. 12. 28.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진 당일 사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고 있던 원고의 D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보전채권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5271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은 D에 대한 부적법한 송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2018. 7. 3.자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또는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관련 민사소송이 부적법한 송달을 통해 확정되었다 하여 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부적법한 송달이었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판결의 확정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2014. 2. 21.)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상 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는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D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손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2,800만 원이었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억 2,980만 원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손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담보채무액이라 함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무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79,998,129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내용이 망 E의 유언 취지에 따라 D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망 E과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개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D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유지(遺旨)에 따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손해행위로 이전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1억 4,9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연립주택의 2층 실거래가격이 2020년 1억 9,000만 원이었으므로(갑 제10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상태, 유익비의 존재 여부 및 층수 등에 따라 시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위 거래가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분할협의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79,998,12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10,615,672원[= (149,000,000원 - 79,998,129원) × D의 상속지분 2/13,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0,615,6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615,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정현, 판사 박재성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 양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층 호 60.95평방미터

지하실 20.32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양천구

대 1100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100 분의 61.11

